

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‘본교’라 한다)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(이하 ‘비정년교원’이라 한다)의 임용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비정년교원의 구분) ① 비정년교원은 강의전담교원과 연구전담교원, 외국인교원으로 구분한다.

② 비정년교원은 부교수, 조교수로 구분한다.

③ 이 규정은 강의전담교원과 연구전담교원, 외국인교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직위) 비정년교원의 직위는 교육 및 연구경력에 따라 부교수, 조교수로 구분한다.
(개정 2023.08.01.)

제4조(임용시기 및 방법) 비정년교원은 매학기 초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할 수 있으며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이나 특별채용의 절차에 따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

제5조(임용계약) ① 비정년교원의 임용은 임용권자와 임용대상자의 계약으로 결정하며, 근무기간, 급여, 근무조건, 업적평가, 재임용 등에 관한 계약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. 단,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.

② 재임용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당연 면직된다.

제6조(임용기간) ① 비정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, 심사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. 다만,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에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한다.

② 비정년교원은 국고지원, 외부기관, 등의 재정지원조건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종료시점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.

③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되지 아니한 때는 당연 퇴직되며 별도의 퇴직통보를 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임용자격)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자로 한다.

① 비정년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 및 학교법인 대구신학원 정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졸업 후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연수 이상인 자로 한다. 단,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연수는 서로 대체할 수 있다.

가. 조교수: 연구실적 2년 및 교육경력 2년

나. 부교수: 연구실적 3년 및 교육경력 4년

② 총장 특별 채용은 ①의 규정을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8조(재계약요건 및 절차) 비정년교원의 업적평가와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9조(책임강의시간) ① 비정년교원의 강의책임시간은 주당 본교 강의료 지급규정에 따르며, 전담영역과 임무 등에 따라 강의책임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(개정 2023.8.1.)

②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또는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책임시수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0조(보수 및 처우) 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보수는 최종학위, 경력, 계약조건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② 계약조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보수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제11조(복무) ① 비정년교원의 복무는 「교원복무 규정」을 따른다.

② “삭제”

제12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한 지침이나 고등교육법, 학교법인 대구신학원 정관, 우리 대학교의 각종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3조(정년트랙 전환) ①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기간 동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원재임용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 각 영역별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고 본교에서 최소 4년 이상의 재직요건을 갖춘 교원 중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승인을 얻어 전환할 수 있다.(신설 2023.08.01.)

② 전환에 대한 희망은 재임용 신청 시기에 맞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원인사위원장의 추천서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다.(신설 2023.08.01.)

③ 학교발전의 공로가 크거나 학교 정책상 보직을 수행하게 된 경우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상당이 클 경우에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전환할 수 있다.(신설 2023.08.01.)

④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동일 전공 분야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신규채용이 있을 경우에 신규 임용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규임용 심사절차에 따라 임용한다.(신설 2023.08.01.)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